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99호 2015. 7. 06.(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85호 등록 공인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88호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9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7. 0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현로 64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7. 0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7-0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2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64 (마전동)	2008-12-3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2-2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66 (마전동)	2008-12-3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3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32-7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10번길 20-1 (검암동)	2009-09-22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2-3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4로 9 (오류동, 지오네이션(주))	2012-10-25	마중로에서 네번째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269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82번길 6 (가좌동, 동아기계)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1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82번길 6-1 (가좌동, (주)엘트로닉스)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21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4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25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4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27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4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31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46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33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4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35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48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37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17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19-13 (금곡동, 명성엘엔텍)	2009-09-22	봉화로22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90	인천광역시 서구 옥빛로7번안길 15 (경서동)	2013-07-30	옥빛로7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2-4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 15-20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8-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6-14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06-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41번길 23-1 (연희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06-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41번길 25 (연희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0-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20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7-6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66-3 (당하동, 2동)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2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0-1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 (경서동, 청라호수공원프라자)	2010-11-11	크리스탈공원의 공원명 반영	
2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40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16번길 6 (경서동, 허니지)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69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7번길 10 (경서동)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9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7. 0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좌로11번길 36외 1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교시 조서

고시일 : 2015-07-0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가좌동 543-6	가좌로11번길 36	2015.07.03	건물 멸실	
2	인천 서구 오류동 655	봉화로85번길 30	2015.07.03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885호

##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사유


○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5년 7월 10일

3. 등록 공인 내역

“별첨 참조”

##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경계결정 위원회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888호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태권도 진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 태권도 시범단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따른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3,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 정 이 유	○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주 요 내 용	○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구성 ○ 태권도 시범단원, 감독, 코치의 의무 ○ 태권도 시범단원에 대한 지원내용
개 정 안	“별지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관계 법령 발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사업 계획	“해당 없음”
예 산 수 반 사 항	91,412천원 (서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기타 참고 사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 진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서구 태권도 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둔다.

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45명 이내로 한다.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국민의 심신 단련에 이바지하고 구의 홍보사절로서의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코치 위촉)** 감독, 코치는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시범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①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7조(감독,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시범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제8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구청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
2. 훈련에 필요한 여비
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
4. 급·간식비 및 피복비
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수상)**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락을 얻어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시범단은 본 조례로 조직된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발췌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8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이 개정되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례에 시민단체가 배제되어 포함시키고자 함.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74) 또는 Fax(560-2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b>자 치 법 규 명</b>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b>개 정 이 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규인 「공직자윤리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함.</li> <li>○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례에서 시민단체가 배제되어 포함시키고자 함.</li> <li>○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li> </ul>
<b>주 요 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정비(제2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li> </ul> </li> <li>○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안 제1조 ~ 제9조)</li> </ul>
<b>개 정 안</b>	“별 지 참 조”
<b>신·구조문대비표</b>	“별 지 참 조”
<b>관계법령 발췌</b>	“별 지 참 조”
<b>관련사업 계획</b>	“해 당 없 음”
<b>예산수반사항</b>	“해 당 없 음”
<b>기타 참고사항</b>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각 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인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의원”을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을 “3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을 “2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원”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에 의한 승인”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5급”을 “소속 5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소속”을 “구의회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기내로”를 “임기 내로”로,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등)”을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제8조제12항의 규정”을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실조사등을”을 “사실조사 등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회에 보고)”를 “(구의회에 보고)”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공직자윤리법</u>」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u>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u>----- ----- -----.</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제2조(구성) ① <u>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1명을 포함한 5명--</u> <u>각 호에 따라</u>----- -----.</p>
<p>1. <u>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u></p>	<p>1. <u>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u></p>
<p>2. <u>2인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되며,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총무국장으로 한다.</u></p>	<p>2. <u>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u>----- ----- -----.</p>
<p>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u>각호의 규</u></p>	<p>②----- -----<u>각 호에 따</u></p>

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생략)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5급 이

라-----.

1.-----3  
명 중-----.

2.-----2  
명 중-----.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의 원-----  
-----해당-----  
-----.

제3조(기능) ① -----  
각 호-----.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2.-----승  
인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따라-----  
-----

②-----  
각 호-----.

1.-----소속 5급-----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의회에 보고) (생략)

-----  
-----.

1.----제8조제7항-----  
-----제8조제12항-----  
-----

2.----제8조의2에 따른-----  
-----

3.----제22조에 따른-----  
-----

4.----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  
-----  
-----  
-----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  
-----사실조사-----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구의회에 보고) (현행과 같음)

<p>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        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        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        자윤리법 <u>시행규칙</u>」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        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        리위원회”로 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        -----        -----        -----<u>시행규칙</u>-----        -----.        -----        -----        -----        -----        -----.</p>
---	---

## 관계법령 발췌

###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